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 정의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42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 정의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수진의원 등 24인
2. 발 의 일: 2025. 1. 23.
3. 회 부 일: 2025. 1.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운영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 정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 및 제20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2.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u>여성전용 등록 체육시설업: 여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등록 체육시설업</u> 4. <u>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 여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신고 체육시설업</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u>제10조제1항제1호에</u>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u>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u> ----- ----- ----- ----- -----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 ----- ----- ----- -----.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의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과 함께 취업제한 대상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제한 규정은 없음.
- 이에 개정안은 ‘여성전용 등록 체육시설업’,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 등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을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논의에 맞춰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체육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취업제한 관련 입법례]

법률명	취업제한 유형	취업제한 대상	취업제한 대상 체육시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성범죄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 18세 미만)	아동학대범죄자 (성범죄 포함)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노인: 통상 65세 이상)	노인학대범죄자 (성범죄 포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범죄· 성범죄자	-

* 「체육시설법」의 무도학원업·무도장업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6)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유해업소)임 (청소년: 만 19세 미만)

○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취업제한 규정과 결합할 때, 여성 체육시설 이용자를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저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성범죄경력¹⁾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에 배치되는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는바¹⁾, 현행법은 이미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체

1)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육시설 이용자를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일부 마련하고 있음.

-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있는 현행 법률들은 대상 기관을 아동 등의 이용이 ‘가능’한 체육시설로 폭넓게 적용하고 있고 아동 등의 ‘전용’ 체육시설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여성 전용 체육시설을 도입할 경우 시설 간 차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성별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들의 신중검토 의견이 있음.²⁾

○ 참고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성 전용 체육시설 관련 개정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741호)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2) ○ 전북도 남원시는, 개정안보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본문 생략)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 전북도는, 안 제20조제1항과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에서 전북, 강원 등 ‘관할 구역 안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가운데 여성 전용 체육시설로 운영되는 곳이 한 곳도 없으므로 수용 곤란 의견임

[여성 전용 체육시설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개정안 (의안번호)	개정 내용 및 심사경과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741)	<신 설> 제49조의3(여성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여성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여성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2의 여성전용 숙박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2의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여성전용 등록 체육시설업,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
	<심사경과> ○2025. 1. 24. 법사위 회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74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의2. “여성전용 숙박업”이란 여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말한다. <신 설>
	<심사경과> ○2025. 1. 24. 복지위 회부 ○2025. 3. 18. 전체회의 상정/소위원회 <검토의견> ○법률상 성별에 따른 업종 구분 없이도 현재 영업자는 자율적으로 영업방식을 정할 수 있음, 개정 취지는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 본 법률의 목적과 상이함 등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744)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3의2. <u>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여성만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을 말한다)</u> <신 설>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심사경과> ○2025. 1. 24. 복지위 회부 ○2025. 3. 18. 전체회의 상정/소위원회부 <검토의견> ○성차별 조장 우려(미취학 아동 출입제한 식당, 남성전용 단란주점 등의 경우에도 별도 영업 규정 없음), 개정 취지는 위생상 위해방지 등 본 법률의 목적과 상이함 등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1] 체육시설업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신고 체육시설업(민간체육시설) : 67,205개소

계 (단위: 개소)	등록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
	소계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업	
67,205	549	530	14	5	66,656

□ 신고체육시설업(민간체육시설) : 총 66,656개소

구분	업소수 (개소)	비율 (%)	구분	업소수 (개소)	비율 (%)
계	66,656	100.0	종합체육시설업	299	0.45
체육도장*	16,126	24.19	인공암벽장업	328	0.49
당구장	15,477	23.22	승마장업	122	0.18
체력단련장	14,976	22.47	썰매장업	115	0.17
골프연습장	8,573	12.86	무도장업	65	0.10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골프,야구)	6,201	9.30	빙상장업	49	0.07
체육교습업**	2,874	4.31	야구장업	38	0.06
수영장업	891	1.34	요트장업	17	0.03
무도학원업	500	0.75	카누장업	5	0.01

* 체육도장 :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 체육교습업 :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30일 이상 교습행위 제공업)